

1. 개정이유

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이 일부 개정(법률 제17683호, ‘20.12.22. 공포, ’21. 6.23. 시행)됨에 따라 하위부령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제때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上 “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 부여”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부령에 조사권을 명시함.

나. 조사에 필요한 문서서식을 구체적으로 포함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조치”를 “조사 및 조치”로 한다.

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출석요구서, 보고요구서 및 자료제출요구서)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, 보고요구서 및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

제4조의3(현장출입조사서)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
제4조의4(발송확인대장)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

제4조의5(조사연기신청서)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연기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

제4조의6(조사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)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

제4조의7(의견제출서)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.

제4조의8(조사결과통지서) 영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는

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)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<u>조치</u>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	제4조(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) ----- ----- ----- <u>조사 및 조치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출석요구서, 보고요구서 및 자료제출요구서)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, 보고요구서 및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3(현장출입조사서)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4(발송확인대장)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5(조사연기신청서)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연기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6(조사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)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</u>

<u><신 설></u>	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 제4조의7(의견제출서) 영 제16조 의2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.
<u><신 설></u>	제4조의8(조사결과통지서) 영 제1 6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 다.